



※ 기재 방법

(뒤 쪽)

- ①: 신고 당시 시설물의 소유자를 적습니다.
- ⑦: 미사용 시설물의 소재지를 적습니다.
- ⑧: 해당 시설물의 전체 면적 대비 미사용 면적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야 하는 부대시설 또는 공유시설 면적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은 ( )에 적습니다.
- ⑪: 6하 원칙에 따라 적습니다.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